

●서울관악지청공고 제2026-06호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.

2026년 06월 29일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

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

인증번호	기관명 (대표자)	소재지	취부사유 및 근거규정	취소일자
제2007-048호	(주)조이비전 (김○훈)	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-16 (가산동) O동 713호	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(법 제18조제1항제2호)	'26. 6. 24.

끝.